

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7일

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 시험일시 : 2022. 10. 29.(토)

- 행정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: 10:00 ~ 11:40(100분)
- 수의7급,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: 10:00 ~ 11:00(60분)

2 시험장소

직 렌(직류)		응시번호	시험장
공개 경쟁	행정(일반행정)7급	70100001 ~ 70100492	울산공업고등학교 (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4번길 49) ※ 외부 차량 주차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경력 경쟁	수의(수의)7급	70200001 ~ 70200002	
	의료기술 (의료기술)9급	임상병리 93000001 ~ 93000064	
	시설(일반토목)9급	93100001 ~ 93100003	
	보건(보건)9급	93300001 ~ 93300010	

3

응시자 준수사항

[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]

가.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**확진자 및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**합니다.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기간 내에 **사전 신청을 하여야 하며**,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, 시험장이 아닌 **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(자택 시험 불가)**할 수 있습니다.

※ 시험문제 수송, 시험장 준비 등의 관계로 **사전 신청하지 않은 확진자, 자가격리자는 응시가 어렵습니다.**

- 사전 신청기간 : 2022. 10. 24.(월) 09:00 ~ 10. 28.(금) 18:00
- 신청방법 : 전화 신청(채용관리팀 ☎052-229-2440~2444) 후 서류 제출(이메일)
- 제출서류
 - 자가격리자(재택치료 확진자 포함) : 응시 신청서(붙임2)
 - 확진자(병원,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자) : 응시 신청서(붙임2),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
- 해당 수험생은 즉시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관리팀으로 유선 연락하여 응시 신청 절차 안내를 받으시고,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에게 본인이 수험생임을 알려서 지정된 시험응시 전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바랍니다.
 - ※ 자가격리자는 자차,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지정 시험장소 이동(대중교통 이용 금지)
 - ※ 타지역에서 확진된 경우 시·도의 시험여건에 따라 응시가 어려울 수 있음

나.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시행하고자 응시생 건강 상태 및 최근 출입국 이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오니 **‘자진신고시스템 (<https://local.gosi.go.kr>)’**을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자진 신고 기간 : 2022. 10. 24.(월) 09:00 ~ 10. 28.(금) 18:00

다. 시험 당일 모든 시험장의 **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**됩니다.

라. 모든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철저히 소독할 예정이며, 응시자는 아래의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협조바랍니다.

마. **모든 응시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(개인별 마스크 지참)**하여야 하며, 마스크 미 착용시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.

바. 모든 응시자는 **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** 후 입실하여야 합니다.

※ 체온 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.

사. 시험장 입실 시 **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**하시기 바랍니다.

아. **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**해야 하며, **시험시간 중에도 착용**하되,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자. **기침·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** 의료반 문진 후 **예비시험실에서 응시**하거나 **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**

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징후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차. 격리대상자 응시 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카. 퇴실 시 인원 분산을 위해 저층(빠른 시험실 순)부터 **순차적**으로 **퇴실** 예정 이오니 시험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퇴실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타. 시험실 환기를 위해 **시험시작 전부터 시험종료 시까지 창문 등은 개방**하오니, 각자 **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**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파.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발열, 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증후가 있으실 경우,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[일반사항]

가.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**시험장 위치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**하고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, 시험당일 **09:2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**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**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
※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나.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
다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**(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<http://local.gosi.go.kr/>에서 출력 가능)와 **신분증** [**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한 여권**(주민등록번호 미포함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), **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**] 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
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※ 시험 중 전자·통신기기 소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**모바일 신분증**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**인정하지 않습니다**.

라. **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
마. 시험실 등에 **화장지(휴지)**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하신 수험생은 개인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종료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**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** 당해 **답안지는 무효처리** 될 수 있습니다.

사. **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**,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**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

아.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불펜 똑딱 소리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 내에서는 **흡연을 할 수 없으며**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자. **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**.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**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계산, 통신 기능 등이 있는 **다기능 시계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)**는 **사용이 불가능**합니다.

- 차.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, 계산,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(휴대전화, 태블릿PC, 스마트워치, 이어폰, 스마트밴드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, 디지털카메라, 동영상 및 음악 재생장치 등)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으로 내 놓아야 하며, 시험시간 중 **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.**
- 카.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 하며, **울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비공개합니다.(비공개 시험문제책은 시험감독관이 모두 회수합니다.)**
- 타. 본 공고문, 응시표,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,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.
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

- 가. **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**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**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(사인펜에 "컴퓨터용"으로 표시되어 있음)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**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(제1·2·3·4·5과목)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**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는 **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**하여야 합니다.
- 다. **시험시작 후**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, 답안지 **책형란 해당 책형(1개)에 “●”로 표기**하여야 합니다.
- 라. 답안은 매문항마다 **반드시 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**“●”로 표기**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해**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탁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. (**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**)
 -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■■■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- 바. 답안지는 OMR 판독기로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**반드시 “컴퓨터용 흑색 사인펜”** 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, 점수산출은 **OMR 판독 결과에 따릅니다.** 또한, 답안은 <보기>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정답표기 불인정 등)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.
- 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◐ ⊗ ⊙ ⊖ ⊕ ⊘ ⊙
- 특히, **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, 연필 등에 의한 예비마킹, 미세한 이중표기,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등에도 OMR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**
- 사.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(표기)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가.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~6호 위반행위

-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·가점·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 -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,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4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문제 정답 공개 안내

-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의 정답 이의제기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일정은 시험 당일 문제지 표지에 기재된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

가산점·능력검정시험 확인 결과 및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 안내

[가산점 확인 결과 안내]

- 수험생의 가산점 등록사항을 해당 발급(인증)기관에 조회·확인하여 **본인이 입력한 자료와 상이한 내역**을 아래 일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확인기간 : 2022. 11. 3.(목) 09:00 ~ 11. 7.(월) 18:00

- 게시장소 : 울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 > '시정소식' > 시험공고

[영어·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소명대상자 안내]

- 제출한 영어·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**유효한 성적**을 확인할 수 없는 응시자를 아래 일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확인·소명기간 : 2022. 11. 10.(목) 09:00 ~ 11. 18.(금) 18:00

- 게시장소 : 울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 > '시정소식' > 시험공고

[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 안내]

- 사전공개 점수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은 점수입니다.

- 사전공개 기간 : 2022. 11. 9.(수) 09:00 ~ 11. 11.(금) 18:00

* 확인방법 ①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 접속

② 로그인 ③ 성적조회

- 성적 문의 기간 : 2022. 11. 9.(수) 09:00 ~ 11. 11.(금) 18:00

- 성적 문의 방법 : 인터넷신청*

* 울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 > '시정소식' > 시험정보란 'Q&A게시판'

※ 상기 일정(가산점 확인 결과 안내, 영어·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소명대상자 안내, 필기 시험 점수 사전공개 안내)은 기관 사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6
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열람

- 필기시험 합격자명단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『시정소식-시험정보-합격자공고』에 게시합니다.
- 필기시험 최종 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,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7

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팀(전화 052-229-244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